



금융위,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 강화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금융위는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,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'퇴직연금 가입자보호 강화방안'을 발표함.

- 퇴직연금 시장은 2012년 6월 말 총 적립금액이 54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조 4,000억 원 증가하였으며, 개인형퇴직연금(IRP) 및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 도입, 퇴직금 손금인정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.
- 퇴직연금 시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양적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시장거래 구조,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, 과도한 자산운용 규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,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의 필요성도 증가함.

■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자사 원리금 보장 상품의 운용규제를 강화하는 한편, 퇴직연금 사업자 간 원활한 원리금 보장 상품 교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.

- 가입자 수급권 보호와 고금리·역마진 경쟁 등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사 원리금 보장 상품 편입 한도를 현행 70%에서 50%로 낮추고, 향후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한도를 축소하기로 함.
- 특정사업자 간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의 맞교환을 방지하고, 자사 원리금 보장 상품 편입 한도 규제의 취지를 저해하는 과도한 상품제공 대가요구를 제한함.

■ 또한, 퇴직연금 관련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개편과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, 영업질서 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함.

- 장기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고, 개인형퇴직연금(IRP) 수수료 수준이 최소한 확정기여형(DC) 보다는 높지 않게 설정되도록 유도함.

- 퇴직연금 수수료를 적립금 단위 부과방식으로 통일하고 각 업권별 ·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수료 체계의 일괄조회시스템을 구축함.
- DC · IRP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40% 이내에서 주식형 · 혼합형 펀드 투자를 허용하고, 안정적인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임대형 부동산 펀드에 한하여 주식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적립금의 40% 이내에서 투자를 허용함.
- 모집질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해당 사업자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하는 등 퇴직연금 모집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.

(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강화 방안, 금융위, 10/25)